

서 울 지 방 법 원

관 결

사 건 2002가단203453 손해배상(기)

원 고 1. 고유○○

2. 구○○

3. 권○○

4. 김○○

5. 김○○

6. 김○○

7. 김○○

8. 김○○

9. 남○○

10. 남○○

11. 박○○

12. 박○○

13. 박○○

14. 서○○

15. 서○○

16. 송○○

17. 엄○○

18. 윤○○

19. 이○○

20. 이○○

21. 이○○

22. 이○○

23. 이○○

24. 장○○

25. 정○○

26. 정○○

27. 정○○

28. 정○○

29. 정○○

30. 조○○

31. 지○○

32. 최○○

33. 한○○

34. 홍○○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경선

피 고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서울고등검찰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강금실

소송수행자 윤○○, 변○○, 이○○, 권○○

변 론 종 결 2003. 10. 7.

판 결 선 고 2003. 1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 장○○에게 6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2. 8. 7.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9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장주영에게 4,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녹색연합은 1991. 6.경 환경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들 중 권○○, 김○○, 남○○, 박○○, 박○○, 이○○은 녹색연합의 자원활동가들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녹색연합의 상근활동가들이다.

나. 녹색연합은 ‘2002년 녹색순례’라는 이름으로 2002. 5. 7.부터 같은 달 14.까지 7박8일동안 군산시, 경기 화성군 우정면 매항리, 평택시 등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을 도보 또는 차량으로 순례하면서 미군기지에 의하여 환경이 오염되는 실태를 체험하고, 마지막날인 2002. 5. 14. 서울 용산구 소재 미군기지의 1번 게이트 앞에서 ‘2002년 녹색순례’를 평가하고 보고하는 대회를 갖는 내용의 계획을 세우고, 2002. 5. 5. 미리 종로경찰서장에게 위 보고대회에 관한 집회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군산시 등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에 대한 순례를 마친 다음, 2002. 5. 14. 11:00경 마지막 순례지인 서울 용산구 소재 미군기지 1번 게이트 앞에 도착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원고 서○○의 사회로 ‘2002 녹색순례’의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라. 원고 서○○은 같은 날 11:45경 위 보고대회가 끝나자 집회의 종료를 선언하면서 나머지 원고들에게 소지하고 있는 깃발을 접고, 피켓을 모은 다음 타고 갈 버스가 주차하여

있는 녹사평역 방향으로 집단을 이루지 말고 한사람씩 10보의 간격을 유지하며 출발하라는 내용으로 안내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이 그 안내에 따라 일부는 깃발을 접거나 피켓을 모으며 일부는 녹사평역을 향하여 출발하려는 순간, 미군기지와 원고들 사이에서 원고들이 미군기지로 무단 침입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병력이 갑자기 원고들을 에워쌌다.

라. 원고들은 포위한 경찰을 향해 길을 열어 주고 보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취지로 항의하였는데, 경찰은 이를 무시한 채 여전히 원고들을 포위한 채 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그 자리에 앉아 통행권을 보장하고 귀가를 방해하지 말라는 구호를 외치는 한편 경찰의 행동을 성토했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고, 한편 경찰은 차도 쪽의 병력을 이동하여 개방하였을 뿐 여전히 인도 쪽을 가로막은 채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마. 경찰은 같은 날 13:00경 앓은 상태에서 통행의 방해에 대한 책임자의 해명을 요구하며 항의를 하고 있는 원고들에게 집회가 끝났으니 해산하라고 명령하면서 녹사평역 쪽으로 경찰병력을 세워 계속 막아 놓고 녹사평역의 반대쪽으로 가도록 그 쪽의 길을 터 주었다가, 원고들이 한 두 명씩 연달아 녹사평역의 반대쪽으로 50m 내지 60m 정도 걸어갈 무렵 다시 원고들을 가로막았다.

바. 이때 계속 가려는 원고들과 막으려는 경찰 사이에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 장○○은 경찰의 방패에 맞아 10만원 상당의 안경이 부서지고 오른쪽 얼굴 부위에 염좌상을 입었으며, 그 상처를 치료하는데 2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사. 원고들은 같은 날 13:13경 위 폭행 및 통행방해에 대한 항의를 하며 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하였고, 경찰은 사과나 해명 없이 원고들을 계속 막고 있다가 같은 날 14:10경이 되어 서야 포위망을 풀어 주어 원고들로 하여금 귀가할 수 있게 하였다.

아. 증거관계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 갑7호증의 1, 2, 갑8호증의 1, 2, 증인 김현주, 검갑9호증, 검을3호증에 대한 각 검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소속의 경찰들이 원고들을 에워 쌓고 귀가할 수 없도록 방해하며 2시간이 넘도록 노상에 억류함으로써 원고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나아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원고 장○○에게 상처를 입게 하고 그의 안경을 부서지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침해들은 그것이 적법한 직무집행행위라는 등의 침해를 적법하게 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행위이므로,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그 소속 경찰들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이 집회를 마친 다음 사전에 신고한 바 없는 불법적인 행진을 하려고 하여 공공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를 지킬 책임이 있는 경찰로서는 그러한 불법행진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원고들을 에워 쌓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원고들을 일시적으로 감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불법적인 행진을 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집회장소는 미군기지의 바로 앞으로 부근에서 수많은 집회가 열렸고 집회 도중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미군기지 내로 기습적으로 난입·점거하려는 시도도 수차례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상존해 왔는데, ‘2002 녹색순례’의 성격상 원고들도 불법적인 행진을 하면서 미군기지에 대하여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전에 이를 차단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및 제5호는 ‘경비·요인경비 및 대간첩작전수행’과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경찰관의 직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었는지 그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이 참가한 ‘2002 녹색순례’의 성격과 원고들의 집회장소가 미군기지 부근이라는 장소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들의 집회 후 해산하려는 움직임만으로는 원고들이 목전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액의 결정

가. 위자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들의 신분관계, 이 사건 ‘2002 녹색순례’의 목적과 동기, 피고 소속 경찰들이 원고들을 포위·감금하게 된 경위와 그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나. 치료비와 안경값

원고 장○○이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200,000원과 부러진 안경값 100,000원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장○○에게 치료비 등 6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02. 5. 14.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2. 8. 7.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

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의, 2003. 6. 1.부터 같은 날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판사 차행전